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개정이유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순수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76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43호, 2008. 6. 20. 공포, 2008. 6.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저장소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순수기술적 사항인 배관의 규격, 안전장치의 설치방법 등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연료공급시마다 실시하던 안전점검을 수요자가 요청할 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액법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무 및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로 사업자의 편익증대 도모(제20조제1항 및 별표 20)
 - 수요자별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을 제출하는 대신 점검현황 총괄표를 제출토록 개선하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 확인서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 의무조항 폐지
-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현실화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부담완화(제20조제1항제2호)
 - 동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마다에서 수요자의 요청시마다로 개선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변경검



- 사 대상 신설(제50조제1항)
- 저장설비(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용기집합설비,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증가 공사
-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교체 설치하는 공사
- 저장설비(용기,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종류를 변경하는 공사
- 가스설비(기화장치, 펌프 및 압축기만을 말한다)의 수량을 증가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신청기관 이원화로 사업자의 선택 확대(제50조제4항)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가스안전공사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검사기관도 신청서를 받도록 함
-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 확대로 용기가스소비자의 권익보호(제52조제1항제2호나목)
- 보상대상에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도 포함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 기술 및 검사 등의 기준 개정(별표 3, 5, 6, 7 및 15)
- 성능기준만 규칙에 존치하고 순수기술적 사항은 상세기준에 규정[기술기

준체계 개편(코드화)내용 반영
< '09. 1. 1부터 시행>

지식경제부령 제 19 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저장탱크”를 “저장탱크·마운드형 저장탱크”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을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2의2.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충전사업”을 “충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충전사업”을 “충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집단공급사업”을 “집단공급 및 저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판매사업”을 “판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조사업”을 “제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9”를 “별표 6”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별표 3제1호가목4)나) 및 14)가)를 “별표 3제1호가목3)마) 및 바)”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용

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한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는”을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계도물”을 “계도물(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 사업자의 계도물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 51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공급할 때마다”를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로 한다.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3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저장 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 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 하는 용기저장소의 안전성 확인이 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기 준: 별표 7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별표 3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저장 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 하는 용기저장소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6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수시검사 기준: 별표 3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저장 시설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 하는 용기저장소의 수시검사기준: 별표 6

제3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정밀안 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3
2.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정밀안전진 단 및 안전성평가 기준: 별표 5

제34조 중 “검사기관”을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37조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그에 준하여 따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 할 수 있다”를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 세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8조 중 “별표 19와”를 “별표 7과”로 한 다.

제41조 본문 중 “가스용품제조기술기준”을 “가스용품 제조의 기술기준”으로 하 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0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



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설비(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용기집합설비,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증가 공사
2.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교체 설치하는 공사
3. 저장설비(용기,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종류를 변경하는 공사
4. 가스설비(기화장치, 펌프 및 압축기만을 말한다)의 수량을 증가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5.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제50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한국가스 안전공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별표 16과”를 “별표 15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나목4)를 삭제한다.

제58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시설기준”을 각각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호텔 및 여관”을 “호텔·여관·극장·교회 및 공회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극장·교회·공회당”을 “예식장·장례식장 및 전시장”으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별표 17 및 별표 1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0의 제2호가목3)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5) 중 “소비설비 안전점검표와 별지 제33호서식의 소비자보증책임보험 가입확인서”를 “소비설비 안전점검표”로 하며, 같은 호 라목1) 및 3) 중 “2일”을 각각 “5일”로, “정산”을 각각 “정산 및 납부”로 한다.

아) 제52조에 따른 소비자보증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별표 22의 제1호 중 “12월”을 “11월”로 한다.

별표 22의 제2호가목 중 “전문교육대상자는 매년 1월 말일까지 교육신청을 하여야 하고, 새로 전문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한다.

별표 22의 제4호의 제목 중 “기간”을 “시기”로 하고, 같은 호 표 중 교육대상자란 오른쪽란의 “교육기간 등”을 “교육시기”로 하며, 같은 표의 비교란 제1호 중 “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한다”를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다”로 한다.

별표 23의 제3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등의 안

전관리 운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인증마크를 취득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할인

별표 23의 제3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3)에 따라 인증마크를 취득한 사업자는 A등급을 우선 적용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계약의 해지란 중 “2일”을 “5일”로, “정산”을 “정산 및 납부”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관리방법란 제4호 중 “2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란 제2호 중 “첨부한 보험가입확인서와 같습니다”를 “같이 계약체결 시 설명드립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안전책임에 관한 사항란 다음에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 확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확인	<p>같은 가스사고를 대비하여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가스사용 중 불의의 가스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사망(후유장애 포함)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재산피해의 경우 3억원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적인 사고 또는 계약서상의 기본적 준수사항 위반과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p> <p>※ 법령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인 소비자에 대하여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	---

별지 제3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제50조제9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4 및 별표 7 중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에 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11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5항, 제29조제2항·제5항, 제30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50조제8항, 별표 3, 별표 4(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관련 규정은 제외), 별표 5, 별표 6, 별표 7(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관련 규정은 제외)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0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용기가스소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보험에 대하여는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4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추가된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



개월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가스용품 제조시설·집단공급시설·판매시설·저장소시설·영업소시설 및 사용시설로서 충전

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시설은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u>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u>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① ----- -----, 1. ----- ----- <u>저장탱크·마운드형 저장탱크</u> ----- -----, 2. (현행과 같음) <u>2의2. “마운드형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흙과 모래를 사용하여 덮은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시설에 설치되는 탱크를 말한다.</u>
3. ~ 18. (생략) ② ~ ④ (생략) ⑤ 「 <u>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u> 」(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마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탱크”란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3. ~ 1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 ----- ----- -----, 제10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 ----- ----- -----
제10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3조제4항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시설기	제10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 ----- ----- -----

현 행	개정안
<p>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액화석유가스 <u>충전사업</u>의 시설기준과 기술 기준: 별표 3</p> <p>2. 액화석유가스 <u>집단공급사업</u>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5</p> <p>3. 액화석유가스 <u>판매사업</u>의 시설기준과 기술 기준: 별표 6</p> <p>4. 가스용품 <u>제조사업</u>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p> <p>5. 액화석유가스 <u>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u>: 별표 8</p> <p>② 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을 부칙 제3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란 <u>별표 9</u>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p> <p>제11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① 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별표 3제1호가목4나) 및 14가)</u>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것</p> <p>2.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20조(공급자의 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액</p>	<p>-----.</p> <p>1. -----<u>충전</u>----- -----</p> <p>2. -----<u>집단공급 및 저장소</u>----- -----</p> <p>3. -----<u>판매</u>----- -----</p> <p>4. -----<u>제조</u>----- -----</p> <p>〈삭 제〉</p> <p>② ----- ----- -----<u>별표 6</u> -----.</p> <p>제11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① ----- ----- -----.</p> <p>1. <u>별표 3제1호가목3)마) 및 바)</u>----- -----</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20조(공급자의 의무) ① ----- ----- ----- ----- ----- ----- ----- ----- -----</p>

현 행	개정안
<p>⑤ <u>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 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맞는지 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방법과 그 밖의 세부 검사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⑥ (생 략) 제29조(정기검사)① (생 략)</p> <p>② <u>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 사기준은 별표 16과 같다.</u></p> <p>③ · ④(생 략)</p> <p>⑤ <u>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방법과 그 밖의 세부 검사방법은 지식경제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⑥ (생 략) 제30조(수시검사)① · ②(생 략)</p> <p>③ <u>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6과 같다.</u></p>	<p><u>완성검사기준: 별표 3</u></p> <p><u>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5</u></p> <p><u>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액화석유가스 총 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의 안전성 확인이나 완성검사기준: 별표 6</u></p> <p><u>4.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기준: 별표 7</u></p> <p>〈삭 제〉</p> <p>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정기검사)① (현행과 같음)</p> <p>② <u>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 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3</u></p> <p><u>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5</u></p> <p><u>3.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액화석유가스 총 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6</u></p> <p>③ · ④(현행과 같음) 〈삭 제〉</p> <p>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시검사)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u>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u></p> <p><u>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수시검사기준:</u></p>

현 행	개정안
<p>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7에 따른 <u>가스용품제조기술기준</u>에 따른다. 다만, 시·도지사는 별표 7에 따른 표시가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u>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50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신 설></p> <p>①·② (생략)</p> <p>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u>한국가스안전공사</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 ⑥ (생략)</p> <p>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u>별표 16</u>과 같다.</p> <p>⑧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p>	<p>----- ----- ----- -----<u>가스용품 제조의 기술기준</u>----- <단서 삭제>----- ----- -----.</p> <p>제50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저장설비(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용기집합설비,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증가 공사</u></p> <p>2. <u>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를 교체 설치하는 공사</u></p> <p>3. <u>저장설비(용기,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만을 말한다)의 종류를 변경하는 공사</u></p> <p>4. <u>가스설비(기화장치, 펌프 및 압축기만을 말한다)의 수량을 증가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u></p> <p>5. <u>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u></p> <p>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p> <p>④ ----- ----- -----<u>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u>-----.</p> <p>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p> <p>⑧ <u>제2항부터 제4항까지</u>----- -----<u>별표 15</u>와----- -----.</p> <p><삭 제></p>



현 행	개정안
<p><u>주에 맞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방법과 그 밖의 세부 검사방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p> <p>⑨ 완성검사나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단서 신설></p> <p>⑩ (생략)</p> <p>제52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p> <p>가. (생략)</p> <p>나. 용기가스소비자의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p> <p>1) ~ 3) (생략)</p> <p>4) 별표 20 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공급계약을 맺지 아니하거나 많은 수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맺은 용기가스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p> <p>5) (생략)</p> <p>② (생략)</p> <p>제58조(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⑨ ----- ----- -----, 다만 제48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완성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p> <p>⑩ (현행과 같음)</p> <p>제52조(보험가입 등)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p> <p>----- -----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p>